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0161

발의연월일: 2023. 2. 22.

발 의 자 : 홍문표 · 엄태영 · 이채익

박덕흠 • 윤재갑 • 정우택

김선교 • 박 진 • 조명희

서병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5일부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 있음.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업계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가 증가하고 있어 다부처·범농어업계 협의·조정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는 존속기한이 5년(2024.4.24.까지)으로 정해져 있어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업·농 어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 농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삭제). 법률 제 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법	<u><삭 제></u>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